작업전 안전점검
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
조심조심 코리아

서비스업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

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
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"안전·보건교육"을 실시하도록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2016년 8월 18일부터

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도
근로자에게 **안전·보건교육**을
실시하여야 합니다!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

서비스업 근로자 안전·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

서비스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해서도
"안전·보건교육"을 실시하도록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이 개정되었습니다.

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교육시간의 1/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교육종류	교육대상	적용되는 교육시간	기존 교육시간
정기교육	사무직	**매분기 1.5시간 이상**	매분기 3시간 이상
	비사무직	**매분기 3시간 이상**	매분기 6시간 이상
	관리감독자	**연간 8시간 이상**	연간 16시간 이상
채용 시 교육		**4시간 이상**	8시간 이상
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		**1시간 이상**	2시간 이상
특별교육		**8시간 이상**	16시간 이상

도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·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교육 과정	정기교육		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
	근로자	관리감독자	
교육 내용	•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•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•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•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	• 작업공정의 유해·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•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•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•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• 유해·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	• 기계·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•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•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•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•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•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
* 특별안전·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표 8의2 참고

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(교육일지 등)를 비치해야 합니다.

※ 교육의무 미 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 ~15만원)

안전·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공단 홈페이지 접속 > 정보마당 > 안전보건 자료실 > 업종별 자료 > 서비스업

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·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.

• **신청**: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(http://www.kosha.or.kr) • **문의**: 안전보건공단 1644-2275

온라인 신청방법: 공단 홈페이지 접속 > 사업안내 / 신청 > 교육 / 미디어 > 사업장 교육 강사지원 > 강사지원 신청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